

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6 - 909 호

- 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 -  
「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」 지원 공고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‘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(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)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5일

인천광역시장

## ■ 특별자금 지원 개요

### 1. 지원 규모: 1,650억 원

### 2. 지원 대상: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

-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(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)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
  - 1) 제조업: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% 이상
    - \* 제조업관련업: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·허가증 **必** (공고문 참고)
  - 2)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(사전상담必)
    - \*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하나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
-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(이차보전)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
  - \* 잔여한도 =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-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(대출원금 기준)
  - \*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

### 3. 지원 내용: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

- 지원 한도: 일반기업 10억 원(우대10~100억 원,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)
  - ※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/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(최저 2억 원)
- 지원 기간: 1년(만기 일시 상환)
- 지원 금리: 이차보전 1.9%p 균등지원(하나은행 0.6%p, 인천시 1.3%p)

### 4. 기타 조건

- 취급 은행: 하나은행 (타 은행 불가)
- 대출 금리: 하나은행이 정한 협약 금리
- 대출 취급기한: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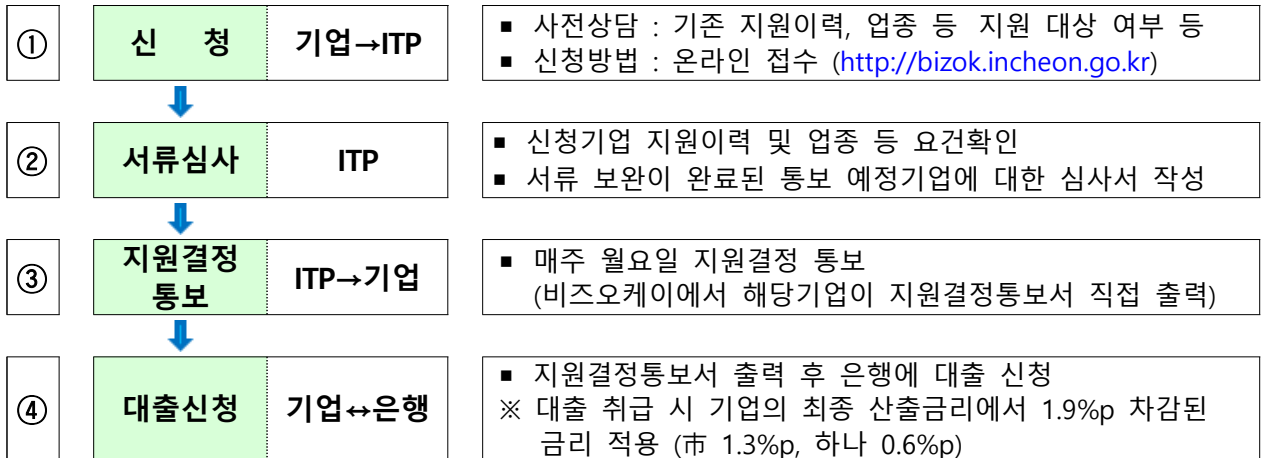
## 5. 신청 및 접수

- 신청 기간: 2026. 4.22.(수) 10시 ~ 재원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(비즈오케이 <http://bizok.incheon.go.kr>)
- 신청 문의: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☎(032)260-0661~0664

## 6. 구비서류

| 구분        | 서류 및 요건  |     |   |       |
|-----------|--|-----|---|-------|
| 사업자등록증    |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 |     |   |       |
| 재무제표      |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증명원(홈택스))<br>단,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,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 |     |   |       |
| 업종증빙서류    |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 |     |   |       |
|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제조업</td> <td>제조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<br/>제조면적 500㎡ 미만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주용도: 공장 또는 제조업소) 및 임대차계약서(임차시必)</td> </tr> <tr> <td>제조관련업</td> <td>등록증 및 인·허가증</td> </tr> </table> | 제조업 | 제조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<br>제조면적 500㎡ 미만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주용도: 공장 또는 제조업소) 및 임대차계약서(임차시必) | 제조관련업 |
| 제조업       | 제조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<br>제조면적 500㎡ 미만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주용도: 공장 또는 제조업소) 및 임대차계약서(임차시必)  |     |   |       |
| 제조관련업     | 등록증 및 인·허가증  |     |   |       |
| 지방세 증명서   | 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)   |     |   |       |
| 우대관련 증빙서류 | 우대조건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  |     |   |       |

## 7. 지원절차



## 8. 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 이력, 지원 항목별 심사 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
- 지원 한도 산정
  - 최근 결산 매출액의 1/3과 각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이며, 기존 상환 중인 대출 원금을 제외하여 지원 한도 산정
  - 창업 1년 미만(또는 결산 기간 미도래)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
  -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
  -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
- ※ 기타 세부적인 심사 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름
- ※ 심사 기준 완화

-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
-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(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) 미적용

## 9. 지원제외 대상

- 시(市) 경영안정자금(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)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  - ※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(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)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-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(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)
  - ※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
- 위탁생산기업(OEM) 제외
-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을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에 한함)
-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-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## 10. 지원결정 취소 등

- 지원 결정 후 폐업, 관외 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
-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## 11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
-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,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
  - \* 보증서는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인천신용보증재단 등) 별도 문의
-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
- 용자지원기간 중 휴·폐업하는 경우, 사업장(공장)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,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(단,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)
-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,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
-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별도 시행한 '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(이자차액보전) 지원 공고' 의 한도와 통합 적용(합산관리)되므로, 동일 기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, 선접수 1건만 유효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
-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(신청기업 대표자)에게 귀속하며, 구비서류 누락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, 신청자(기업) 외 대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신청취소 처리할 수 있음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 및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

# '금융기관(하나은행)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' 개요

## □ 지원대상별 세부현황

○ 세부 심사방법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※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-201호 참고

○ 우대 1회 지원 항목(지원한도 10억 원 이하)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

| 구분          | 지원항목                 | 신청대상(요건)  | 지원한도  | 지원율   | 비고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기업        |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조업<br/>:공장등록(또는 용도증빙(제조소, 공장), 제조업전업률 30% 이상</li> <li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2px;">· 공장건축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 필수</li> <li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2px;">· 공장건축면적 500㎡ 미만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제조 용도 확인)</li> </ul> | 10억 원 | <b>1.9%p</b><br>균등지원<br>(시 1.3%p, 하나 0.6%p)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조업관련업(별첨)<br/>: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</li> </ul>   |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성·장애인기업    | 여성기업                 | ■ 여성기업인확인서  | 10억 원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여성친화기업               |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 | 10억 원 |   |  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장애인기업                | 장애인기업확인서  | 10억 원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       | 행복나눔 참여인증서<br>(한도) 기부업체Ⅰ 5억원이내, 기부업체Ⅱ 10억원 이내   | 10억 원 |   |  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| 유망중소기업               |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  | 15억 원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아름다운공장               | 인천시 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  | 15억 원 |   |  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비전기업                 | 인천시 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  | 30억 원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중견성장사다리              | 인천시 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 | 50억 원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중소기업인대상              | 인천시 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 | 50억 원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         | 인천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  | 10억 원 |   |  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          | 인천시 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  | 10억 원 |   |  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가족친화기업               |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  | 10억 원 |   |  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    | 인천시 지정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 | 10억 원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         | 인천시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서   | 10억 원 |   |  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산업평화대상               | 산업평화대상 수상 선정서   | 15억 원 |   |  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지역 상품 구매 기업          | 지역상품 매입총괄표 및 관련 증빙(세금계산서)   | 10억 원 |   |   | <b>2.0%p</b><br>균등지원<br>(시 2.0%p) |
| 인천미래혁신기업    | 인천미래혁신기업 선정 서류       | 50억 원   |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혁신형기업       | 벤처기업                 | 벤처기업확인서   | 10억 원 |   | <b>1.9%p</b><br>균등지원<br>(시 1.3%p, 하나 0.6%p)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          |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서 (중소벤처기업부)  | 15억 원 | 우대1회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지식기반서비스업             |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| 15억 원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경영혁신형중소기업 (MAIN-BIZ) | 메인비즈 인증서  | 10억 원 | 우대1회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      |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  | 10억 원 | 우대1회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분          | 지원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대상(요건)   | 지원한도  | 지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--------|
| 지역 R&D 혁신기업 |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인증기업   | ■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인증서   | 10억 원   | 1.9%p<br>균등지원<br>(시 1.3%p,<br>하나 0.6%p) | 우대1회     |
|             |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            | ■ IR52장영실상 수상 기업   | 10억 원   |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산업포장, 산업훈장 수상기업           | ■ 산업포장, 산업훈장 수상 기업   | 10억 원   |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국가R&D(연간 5억 원 이상) 선정기업    | ■ 국가R&D(연간 5억원 이상) 선정기업  | 10억 원   |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예비(아기)유니콘, 퍼스트펍권 선정기업     | ■ 예비유니콘, 아기유니콘, 퍼스트펍권 선정기업   | 10억 원   |   |          |
| 수출형 기업      | FTA인증 수출기업                | ■ 업체별(품목별)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(관세청)   | 10억 원   | 우대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           | ■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  | 10억 원   |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수출기업<br>(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관세무역개발원)</li> <li>■ 간접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정보통신)</li> <li>(한도) 수출실적의 1/2과 매출액의 1/3, 30억원 중 가장 작은금액</li> <li>■ 수출계약서(T/T, L/C, 구매확인서 등)</li> <li>(한도)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%와 매출액의 1/3,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</li> </ul>   | 30억 원   |   | 대출기간: 1년 |
| 고성장 기업      | I.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% 이상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공통)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</li> <li>· (고성장 I)</li> <li>-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% 이상</li> <li>- 개업일자 2022. 01. 02 이전</li> <li>-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</li> <li>· (고성장 II)</li> <li>-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% 이상</li> <li>-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</li> <li>- 개업일자 2022. 01. 02 이전</li> <li>-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</li> </ul>  | 30억 원   | 1.9%p<br>균등지원<br>(시 1.3%p,<br>하나 0.6%p)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II.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% 이상  |  | 30억 원   |   |          |
| 고용창출 기업     | I.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% 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공통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: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(12월 귀속)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(매월) 신고서</li> <li>· 고용창출 I 과 II는 개업일자가 2022. 01.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,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</li> <li>· (고용인원 산출방법)</li> <li>- 1안: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(귀속분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</li> <li>- 2안: 평균인원 계산</li> <li>· 월별 신고업체 : 귀속연월 1월~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</li> <li>· 반기별 신고업체 : 귀속연월 1월분(상반기), 7월분(하반기)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</li> </ul> | 10~55억원<br>(고용인원수 대비<br>최대한도 :<br>최근월<br>고용인원<br>50명 이상시<br>40억 원,<br>100명 이상시<br>50억 원<br>단,<br>일자리창출우<br>수기업은<br>최대한도<br>55억 원) |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II.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% 이상 |  |   |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| III.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         | ■ 정부 또는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  |   |   | 우대 1회    |
|             | IV. 직전1년간                 | ■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, 고용인원 10명  | 10억 원   |   |          |

| 구분          | 지원항목               | 신청대상(요건)  | 지원한도     | 지원율  | 비고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|------|
|             | 고용인원 10명 증가        | <p>증가(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, 11개월, 13개월 등은 불가)</p> <p>■ 고용보험가입자 명부</p> <p>· (고용인원 증가분 = B - A)</p> <p>- A :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</p> <p>- B :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</p>   |     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| V.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| 인천시 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 | 10억 원    |  | 우대1회 |
|             | VI.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  |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  | 10억 원    | <b>2.0%p</b><br>균등지원<br>(시 2.0%p)              | 우대1회 |
| 산업확충<br>기업  | 해외유턴기업             | <p>■ 완전복귀: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내 공장을 설립(사업자등록)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</p> <p>■ 부분복귀: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내 공장을 설립(사업자등록)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</p> <p>※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(제조업만 해당되며,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)</p> | 50~100억원 |  | 우대1회 |
|             | 우리시 전입기업           | <p>우리시로 공장(본점)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(※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)</p> <p>· 법인등기부등본: 법인의 이전일자(입주일자) 확인</p> <p>· 사실증명: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(입주일자) 확인</p>  | 50억 원    | <b>1.9%p</b><br>균등지원<br>(시 1.3%p,<br>하나 0.6%p) |      |
|             | 신규산단 입주기업          | <p>■ 신규산단(강화일반, 서운산단, IHP도시첨단, I-FOOD PARK) 입주 예정기업 또는 입주(1년이내) 기업</p> <p>■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(1년이내) 기업</p>   | 20억 원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|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   | <p>· 입주계약(확인서)</p> <p>-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</p> <p>※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 추경빙</p>   | 10억 원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| 6대전략산업             | <p>전략산업확인서(소정양식)</p> <p>※ 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</p>   | 10억 원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| 재해기업               | <p>재해기업(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)</p> <p>· 재해피해 증빙서류</p> <p>- 재해확인서(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) 부대시설 증빙서류, 재해확인증(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)</p>   | 15억 원    |  |      |
| 사회적<br>친화기업 |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    | <p>■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 통한 여성인턴 채용기업</p> <p>■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</p> <p>■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</p>  | 1억 원     | <b>1.9%p</b><br>균등지원<br>(시 1.3%p,<br>하나 0.6%p) | 우대1회 |
|             | 창조경제혁신기업           | <p>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</p> <p>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(추천서)</p>  | 5억 원     |  |      |
|             | 관광업                | <p>■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, 지정 및 허가받은 기업</p>   | 3억 원     |  |      |

※ (지역 상품 구매 기업)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(제조원가명세서)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('26.1.1.~) 지역상품 10% 이상 매입한 기업

## 별첨

#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안내

### ① 지원대상 :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

#### ① 제조업 : 제조업(공장등록 必), 제조업전업률 30% 이상

| 요건   | 매출요건  |
|--|---|
| <b>공장등록 (또는 용도증빙(제조소, 공장))</b><br>- 공장건축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 필수<br>- 공장건축면적 500㎡ 미만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<br>대장(제조 용도 확인) | <b>전업률 30% 이상</b><br>-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<br>제품매출비율<br>- 제품매출/전체매출=30%이상 |

#### ② 제조업관련업 :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

| 번호 | 업종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빙서류  | 비 고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1  | 자동차정비업(종합,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(종합,소형) 등록증  | 부분(전문) 정비업제외 |
| 2  |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<br>택시운송업              | ( 시내버스 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<br>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<br>( 전세버스 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<br>운송사업 등록업체<br>( 택시 ) 택시운송사업등록증 |              |
| 3  |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  |              |
| 4  | 측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  |              |
| 5  | 전기공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|              |
| 6  | 정보통신공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|              |
| 7  | 소방시설공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  |              |
| 8  | 무역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<br>※ 직접 수출실적 70% 이상 충족   |              |
| 9  |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<br>※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 |              |
| 10 |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·<br>지식기반서비스업 ·<br>지식서비스업 |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 |              |

※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은 별표 참고

[별표]

<제조관련서비스업·지식기반서비스업·지식서비스업 범위>

제조업관련 서비스업

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표준산업분류번호 |
|--|----------|
| 도로화물 운송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93      |
| 해상 운송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1      |
| 항공 운송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1       |
| 화물 취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294     |
| 보관 및 창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210     |
| 물류 터미널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2913    |
| 화물 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| 52992    |
| 화물 포장,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| 52993    |
|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) | 76390    |
| 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                | 74212    |
| 폐기물 수집·운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1      |
| (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)                    | (39009)  |
| 폐기물 처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2      |
| 폐수 처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012    |

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

| 산업명   | 표준산업분류번호 |
|---|----------|
|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| 62021    |
|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  | 58211    |
|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     | 58212    |
|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      | 58219    |
|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58221    |
|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8222    |
|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2010    |
|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<br>(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) | 63120    |
|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<br>(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)    | 63991    |
| 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111    |
|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112    |
|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113    |
| 전기·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121    |
|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129    |
|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119    |
|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201    |
|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209    |
| 시장 조사업(여론 조사업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1400    |
| 경영 컨설팅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1531    |
|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9001    |
|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9009    |
|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122    |
|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129    |
| 제품 디자인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3202    |
| 시각 디자인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3203    |
| 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                      | 73209    |
|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911    |
| 기타 기술 시험, 검사 및 분석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919    |
|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9111    |
|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59112    |
|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9113    |
|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9114    |

지식서비스업

| 산업명              | 표준산업분류번호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 | 74100    |
|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| 75991    |
|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| 75992    |
| 포장 및 충전업         | 75994    |

## ※ 제조관련서비스업·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

- 1) 제조관련서비스업·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
  - 통계청>통계분류포털>한국표준산업분류>분류코드 검색
  - ※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 
ex.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
(시설경비허가증,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,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)
- 2)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
  -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
  - 관련 매출액 확인 (세금계산서 확인)
  - ※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(관련매출)가 전체매출의 20% 이상 충족하여야 함  
ex. 포장 및 충전업 등